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31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 : 윤건영 • 전현희 • 김 윤

박해철 · 정태호 · 한준호

정을호 · 한병도 · 민병덕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第6條(常任委員) ① 中央選擧管理 | 第6條(常任委員) ① |
| 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 | |
| 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 | |
| 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 |
|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 | |
| 의 常任委員을 둔다. <단서 신 | |
| <u>설></u> | 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
|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
| |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
| | <u>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u>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